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0723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전화*785-7985 /팩스*782-6659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부서장 : 임종근 부장 담당자 : 이병수 대리 e-mail : jacklbs@kcia.or.kr

대한장협: 제11-507호

시행일자: 2018. 11. 27.

수 신 :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도로명주소법상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표기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의 만료에 따라 ‘도로명주소변경증명서’를 삭제하고, 기타 주소변경 사항 등에 대한 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기타주소변경증명서’를 신설하였습니다.
3. 또한 외국협회 및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이 개정된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향후 증명서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인상 내용

증명서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기타주소변경 증명서	회원사 5,000원 비회원사 10,000원	회원사 10,000원 비회원사 20,000원
제조, 제조판매 증명서	회원사 10,000원 비회원사 15,000원 (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000원)	회원사 15,000원 비회원사 30,000원 (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000원)

붙임 :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

